

※ 계약학과는 재교육형/채용조건형으로 입학한 인원 모두를 기재해야 함

【기초생활수급자】 :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제14호라목에 의거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수급권자

【차상위계층】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
【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】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정원 외로 입학한 학생 수

참고

- ※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호: “수급권자”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
- ※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0호: “차상위계층”이라 함은 수급권자(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)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
- ※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: 법 제4조제1호,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

【특성화고 졸업자】 :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제14호나목에 의거 특성화고(특성화고 및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(종합고)) 졸업자가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·제2호·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입학한 학생 수

【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】 :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의거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로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·제2호·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

【농어촌 학생】 :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제14호가목에 의거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또는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의 학생으로 정원 외로 입학한 학생 수

【북한이탈주민】 :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제6호 및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자로 정원 외로 입학한 학생 수

【장애인 등 대상자】 :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제4호에 의거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여 정원 외로 입학한 학생 수

참고

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조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 정원외 입학자 수

- ※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조제3호: “특수교육대상자”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
- ※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5조제1호: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·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
- ※ 장애 유형: 시각장애, 청각장애, 청각장애, 지적장애, 지체장애, 정서·행동장애, 자폐성장애(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), 의사소통장애, 학습장애, 건강장애, 발달지체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

【서해5도학생】 : 「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」 제11조에 의거 서해 5도 출신 학생 중 정원외로 입학한 학생 수

【단원고】 : 「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 제28조에 의거 4·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중 정원외로 입학한 학생 수

【고른기회 대상자】 : 국가보훈대상자, 농어촌학생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, 특성화고교 졸업자,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, 장애인 등 대상자, 서해 5도 학생, 만학도,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정원 내로 입학한 학생 수

【대학 독자적 기준】 :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배려 대상자로서 정원 내로 입학한 학생 수 1)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2)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3)다문화·다자녀가정의 자녀 4)농어촌학교 출신자 5)농어민 후계자 및 자녀 6)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자녀(환경미화원, 경찰(소방)공무원, 군인 등) 7)기타

【기회 균형 선발 비율(%)] : (기회 균형 선발에 의한 입학자수/총 입학자수) × 100

■ 참고사항

- 기회 균형 선발 결과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
-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